

2024 미식행사 개최 협약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446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3년 10월 1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‘세계적인 미식도시 서울’ 인지도 강화 및 고품격 K-푸드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024년 국제 미식행사를 유치하고자 함.
- 나. 이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3 단서에 의거, 2024년 미식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, 이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 (※협약서(안) 기준)
 - 행 사 명 : 비공개
 - ※ 협약 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개최지 확정 발표 전까지(10~11월 중)

- 주최/개최도시 : ***** / 서울특별시
- 행사기간 : 2024년 3월 중/ 3~4일간 ※ 개최일자 변동 가능
- 장 소 : 서울 주요 관광명소, 특급 호텔 중 선정 예정
- 행사규모 : 최대 800명 참석
- 주요내용 : 시상식&리셉션, 환영만찬, 간담회 등

나. 추진경과

- '23. 6~7월 : 서울시-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유치 실무 협의
- '23. 8월 : 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장, 문체위원장 사전 보고
- '23. 9월 : 2024 미식행사 대한민국(서울) 개최를 위한
주최사-서울시-한식진흥원 3자간 협약 체결

다. 업무협약 주요내용

- 협약서명 : 2024 국제 미식행사 개최 협약
- 협약주체 : (주최사) ***** / (개최도시) 서울특별시, 한식진흥원*
※ 한식진흥원 :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
- 협약목적
 - 2024 국제 미식행사 대한민국(서울) 개최 협력 및 행사와 연계한 한식, 서울미식 등 개최지 홍보
- 주요내용
 - (주최기관의 역할과 책임)
 - 행사의 “주최기관” 으로서 행사 내용, 초청 및 브랜딩 주도, 전체 과정에서 ‘개최국’ 의 의견과 지원을 구함
 - ※ 공식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모든 비용은 주최기관에서 부담
 - (개최도시의 역할과 책임)

- 한국 개최 행사의 “개최도시”로서 진행상황을 주최기관과 정기적인 공유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위한 협력
- ※ 주최기관에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, 개최국 별도의 부대행사 기획·운영 비용 부담

라. 기대효과

- 국제 미식행사 유치를 통해 ‘세계적인 미식 관광지 서울’ 인지도 제고 및 K-푸드의 고부가 관광자원화에 기여
- 전 세계 미식 관련 전문가, 미디어,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국제 미식 행사 개최지 홍보 및 식재료·요리법·음식문화 등 소개

마. 소요사업비

- 소요 사업비 : 500백만원(총 1,000백만원, 국비, 시비 5:5 분담)
- 소요내역 : 국제 미식행사 유치 라이선스 수수료, 부대행사 운영비 및 일반 수용비 등

바. 향후일정

- ' 23.10~11월 중 : 개최도시 공개
- ~ ' 23. 12월 : 공식행사 장소 및 부대행사 프로그램 확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한식진흥법, 관광진흥법, 지방자치법

○ 행사의 개최

〈 한식진흥법 〉

제8조(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한식 인력·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
2. 전시회·학술대회의 개최
3.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
4.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〈 관광진흥법 〉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○ 업무협약의 체결

〈 지방자치법 〉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 편성 반영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‘세계적인 미식도시 서울’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“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” 국제 미식행사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〈 협약 개요 〉

- 협약 명 : 2024 A50B 한국 개최 협약
- 체결주체 : 서울시-한식진흥원-윌리엄 리드 社
- 목 적 : 2024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
- 주요내용 : 협약기간, 수수료, 주최사 및 주최국 역할, 기밀유지·해지 등 기타사항

나. 행사 개요 및 협약 추진 경위

- ‘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(A50B)’은 영국 미디어회사(William Reed Business Media, 윌리엄 리드 비즈니스 미디어) 주최로 2013년부터 매년 3월에 아시아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하는 국제 미식행사임.
 - 싱가포르가 2013년부터 2015년, 2023년에 개최하였고, 태국 방콕이 2016~2017년, 중국 마카오가 2018~2019년에 개최하였음.
- 이 행사는 아시아의 음식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인단 300여명의 투표로 아시아 50대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시상, 만찬, 네트워킹하는 것으로 진행됨.

〈 2023 A50B 레스토랑 한식당(국내) 선정 현황 : 7곳 〉

모수[15위, 서울], 온지음[23위, 서울], 밍글스[28위, 서울], 본앤브레드[47위, 서울], 주옥[51위, 서울], 7th Door[55위, 서울], EATANIC GARDEN 조선 팰리스[68위, 서울]
※ 2023 A50B 100위 내 7곳 중 서울미식 100선 업장 6곳

- 주최사는 2024년의 동 행사 개최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농림부와 행사 유치 협의를 진행하였고, 서울시는 6월부터 공동 유치 방안을 협의함.

<관계기관 협의과정>

관계기관	근거	협의일자	협의내용
농림부-주최사	-	'23.1월~3월	행사 유치 협의
농림부	-	'23.4월	2024 A50B 유치 제안서 제출
농림부-주최사	-	'23.5월~	협약사항 등 실무 협의
서울시-농림부	-	'23.6월~7월	2024 A50B 공동 유치 방안 협의
주최사-서울시, 한식진흥원	-	'23.8월	2024 A50B 한국 개최 협약

다. 협약 체결에 대한 법적 · 절차적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교류 및 협력을 포함(제13조제2항제7호)¹⁾하고 있으며,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(동법 제47조제1항제8호)²⁾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에서 ‘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’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,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(제4조)³⁾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(생략) 7. 국제교류 및 협력
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3) 「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」 제4조(협약체결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, 협약서에 "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"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.

- 다만 동 협약은 주최사의 개최지 공식 발표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, 협약 상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사전(제320회 임시회)에 추진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결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.
- 이에 시의회 사전 보고 후 협약서 상 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” 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.
- 또한 「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해당할 경우,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금년도 9월 제7차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추진으로 “행사 개최 시 K-푸드 뿐 아니라 서울시 홍보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 국비로 부담하며,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것” 으로 사전 심사를 받아 절차적 문제점이 없음.

<협약 주요내용>

- ▶ 주최기관의 역할과 책임
 - 행사의 “주최기관”으로서 행사 내용, 초청 및 브랜딩 주도, 전체 과정에서 ‘개최국’의 의견과 지원을 구함
 - ※ 공식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모든 비용은 주최기관에서 부담
- ▶ 개최도시의 역할과 책임
 - 한국 개최 행사의 “개최도시”로서 진행상황을 주최기관과 정기적인 공유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위한 협력
 - ※ 주최기관에 라이선스 수수료 지급, 개최국 별도의 부대행사 기획·운영 비용 부담
- ▶ 비밀 유지 의무
 - 주최사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개최지 선정과 관련하여 언론에 발표하거나 발표하게 하지 않는다.

라. 행사 유치의 필요성

- 서울시가 국제 미식행사 유치를 통해 ‘세계적인 미식 관광지 서울’의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잠재력이 높은 K-푸드가 고부가 가치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4년 국제 미식행사 유치는 실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2024년 아시아대회 유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세계대회까지 단계적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.
- 주최사는 행사주관 동안 셰프, 미디어, 업계 관계자 등 약 1,300여명이 방문함에 따른 소비효과가 약 91억원이며, 공식 웹사이트 홍보 및 미디어 보도로 인한 광고 효과는 약 1,2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.
- 다만 동 협약의 주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식진흥원으로 관련 정책사업의 실무부서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소관하고 있음.
- 따라서 동 사업을 관광산업으로 봐야 할지 고민되는 바, 부서간의 업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만 행사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, 보안조치, 홍보 및 마케팅 등 비용부담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투명해 질 것임.
- 한편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(2024년 3월 24일~26일 경)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(2024년 4월 10일)와 인접해 있으며,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’ (제86조 제2항 제4호)⁴⁾ 하고 있어

4) 「공직선거법」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(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)은 선거일전 60일(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

선거법 적용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-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행사의 경우 「한식진흥법」(제8조(국제 교류 및 협력의 촉진))⁵⁾을 근거로 하는 행사로 본 행사와 부대행사 개최는 문제가 없으나, 추후 행사 내용에 기념품 등 기부행위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 사전에 질의하여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.

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4.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,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

가.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·후원하는 행위

5) 「한식진흥법」 제8조(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한식 인력·정보의 국제교류 및 협력

2. 전시회·학술대회의 개최

3.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

4. 그 밖에 한식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